

가족관계 관련 민원사무 목록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일수	쪽
1	민원지적과	출생신고	즉시	6
2	"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즉시	9
3	"	성·본 계속 사용신고	즉시	12
4	"	입양신고	즉시	14
5	"	친양자 입양신고	즉시	17
6	"	파양신고	즉시	19
7	"	친양자파양신고	즉시	22
8	"	입양취소신고	즉시	24
9	"	친양자파양신고	즉시	26
10	"	혼인신고	즉시	28
11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즉시	31
12	"	혼인취소신고	즉시	34
13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즉시	36
14	"	(①친권상실,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사퇴) 신고서	즉시	39
15	"	(①친권상실회복,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사퇴) 회복신고서	즉시	41
16	"	후견개시신고	즉시	43
17	"	후견인경질신고	즉시	45
18	"	후견종료신고	즉시	47
19	"	사망신고	즉시	49
20	"	사산신고	즉시	52
21	"	(실종, 부재) 선고신고	즉시	54
22	"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	즉시	56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일수	쪽
23	민원지적과	국적취득신고	즉시	58
24	"	귀화신고	즉시	61
25	"	국적회복신고	즉시	64
26	"	국적상실신고	즉시	67
27	"	개명신고	즉시	69
28	"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즉시	71
29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즉시	73
30	"	등록부정정신청	즉시	75
31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즉시	78
32	"	추후보완신고	즉시	80
33	"	창성신고	즉시	82
34	"	성·본 변경신고	즉시	84

출 생 신 고

사무내용	출생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사무소	처리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한	수리 후 1일(8시간)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부 또는 모)이 신분증 지참,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그에 대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 자택에서 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인 2인 신분증 지참 출석 - 출생증명서 증명인란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처리순서	<p>《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p>《 주소지 동사무소 신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 → 주소지 동사무소 접수 → 시청으로 신고서 송부 → 송부된 신고서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신고기간 1개월 경과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여부 ○ 인명용 한자사용(대법원 규칙) 여부 ○ 신고기간 1개월 경과 여부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생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①남	*①혼인중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②여	*②혼인외의 출생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①자택 ②병원 ③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모	부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 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⑨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출생자에 관한 사항		
⑦ 임신주(週)수	임신 <input type="text"/> 주 <input type="text"/> 일	⑧ 신생아체중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kg
⑨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① 단태아 ② 쌍태아(쌍둥이) → 쌍둥이 중 ① 첫번째 ② 두번째 ③ 삼태아(세쌍둥이) 이상 → <input type="text"/> 쌍둥이 중 <input type="text"/> 번째	
출생자의 부(父)에 관한 사항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사항
⑩ 국적	①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시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 외국(국적:)	①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시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 외국(국적:)
⑪ 실제생년월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⑫ 최종졸업학교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수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수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⑬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⑭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 부터	
⑮ 모의 총출산아 수	이 아이까지 총 명 출산 (명 생존, 명 사망)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출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분)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⑦~⑨ 출생자란 : 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 ⑨란 : 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
- ⑩~⑮ 부모란 :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 ⑫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 ⑬란 :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⑦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⑧ 장치·기계 조작성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⑨ 단순노동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⑩ 가사: 전업주부 등 ⑫ 군인: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체외, 직업군인 해당 ⑬ 무작: 특정한 직업이 없음

- ⑮란 : 모의 총 출산아수 -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 (친권자지정) 신고

사무내용	인지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재판인지시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 기간 경과시 최고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父)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란 :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아래의()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 결정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년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④란 :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지정일자 - 협의에 의한 경우→협의일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
 : 지정원인 -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
-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 금치산자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후견인)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주민등록번호
 -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 ⑧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 서류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 협의에 의한 지정 - 협의서,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 - 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 인지증서 등본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분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사본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사이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

성·본 계속 사용신고

사무내용	성·본 계속 사용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본 계속 사용신고서 1부 (법원허가시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협의시 : 부·모 신분증, 인장 법원 허가시 : 신고인 신분증, 인장(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호]

성·본계속사용신고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본계속사용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①남 ②여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②성·본계속사용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① 협의 ② ()법원의 결정			
③기타사항							
④ 신고인	부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모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자격	①소 제기자 ②소의 상대방 ③기타(자격:)						
⑤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 방법

- ①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④란 : 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 날인(또는 서명)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⑤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 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성·본계속사용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②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성·본계속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입 양 신 고

사무내용	입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 친부모 동의 필요(도장, 신분증) (신고인 : 양부, 양모, 당사자-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증인, 친부모 등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4호]

입 양 신 고 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 부				양 모			
① 양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양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①남 ②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모	성명		등록기준지					
④ 기타사항									
⑤ 증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⑥ 동의자	부	성명	① 또는 서명				① 또는 서명		
	모	성명	① 또는 서명				① 또는 서명		
	직계존속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양자의
	양자의 배우자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후견인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⑦ 신고인	양부	① 또는 서명				전화			
	양모	① 또는 서명				전화			
	양자	① 또는 서명				전화			
	법정대리인	① 부모	부	① 또는 서명			전화		
			모	① 또는 서명			전화		
		② 후견인		① 또는 서명			전화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⑧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양자가 될 자(만 15세 미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⑥란 :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판결에 의하여 친권이 상실된 자로 기록된 부 또는 모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최근친, 연장자(동순위인 경우)순위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부모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입양대락자는 입양동의자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금치산자가 양자를 입양시키거나 양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⑦란 :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견인은 허가법원과 허가일자를 기재)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신고의 경우에는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의 후견인이 함께 신고인란에 기재합니다.
- ⑧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 생략합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
 2. 입양동의서1부(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한 때에는 제외).
 3.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및 후견인이 입양승낙을 하는 경우).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입양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5.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신고

사무내용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친양자 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증, 인장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과 양 신 고

사무내용	과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구비서류	○ 과양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 친부모 동의 필요(도장, 신분증) (신고인 : 양부, 양모, 당사자-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증인, 친부모 등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6호]

과 양 신 고 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 양친	성명	한글 (성 /명)	본(한자)		한글 (성 /명)	본(한자)				
		한자 (성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양자	성명	한글 (성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증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⑦ 동의자	부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직계존속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⑧ 신고인	양부	㉠ 또는 서명			전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화					
					이메일					
	① 15세미만자의 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부	㉠ 또는 서명			전화				
		<input type="checkbox"/> 모	㉠ 또는 서명			전화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 또는 서명			전화					
② 직계존속	15세미만자의 과양협의		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③ 소 제기자	④ 소의 상대방			㉠ 또는 서명		전화				
						이메일				
⑨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경우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협의과양을 하는 양자가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의 입양 당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과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자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사유
- ⑦란: 협의과양을 하는 양자가 미성년자(만15세 이상 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최근친, 연장자(동순위인 경우)순위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전항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동의할 부모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⑧란: 양자란은 과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협의 과양을 하는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그 양자 입양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그 자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각각 그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과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 ⑨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 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1. 과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2. 재판상 과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3. 과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 4.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양자가 과양으로 인한 과양신고를 하면서 양자의 본래의 성과 본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과양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5. 과양을 동의한 사람이 작성한 동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후견인이 과양 동意的한 경우이거나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과양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각 1부.
-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과양: 협의과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재판과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과양: 과양증서 등본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재판상 과양(증서등본에 의한 과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② 협의과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 협의과양에 있어서 법 제64조제1항의 협의를 한 사람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신고

사무내용	친양자 파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증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7호]

친양자과양신고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친양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 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 소 제기자		② 소의 상대방		③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⑦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 방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 란 및 ② 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란 :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과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 관계 부활합니다.
 ④ 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 란 : 친양자과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 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 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친양자과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과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분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양취소신고

상 단

사무내용	입양취소에 관한 신고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취소신고서 1부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증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사무내용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1부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증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혼 인 신 고

사무내용	혼인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한	수리 후 1일(8시간)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인(남편,아내)은 신분증 지참,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증인 2인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 작성 (부모 신분증 지참,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 ※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그에 대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여권,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 외국방식으로 먼저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과 그에 대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신분증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신고기간 3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및 증인 2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 신고기간 3개월 경과 여부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년 월 일)		남편(부)		아내(처)				
① 혼인당사자 (신고인)	성명	한글 * (성) / (명)	① 또는 서명	* (성) / (명)	①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② 부모 (양부모)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직전혼인 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⑤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⑥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⑦기타사항								
⑧증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⑨동의자	남편	부 성명	①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① 또는 서명	
		모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① 또는 서명			성명	① 또는 서명	
		모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년	월	일부터	동거
⑪실제결혼생활시작일					
⑫국적	남편	①대한민국(출생시 국적취득) ②대한민국(해수안보통합인시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외국(국적)		처	①대한민국(출생시 국적취득) ②대한민국(해수안보통합인시 국적취득 이전국적:) ③외국(국적)
⑬혼인종류	남편	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		처	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
⑭최종 졸업학교	남편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수대학(교)⑥대학원 이상		처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수대학(교)⑥대학원 이상
⑮직업	남편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사무종사자 ④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학생 ⑪가사 ⑫군인 ⑬무직		처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사무종사자 ④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학생 ⑪가사 ⑫군인 ⑬무직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①, ②란 및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란 :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를 기재합니다.
- ④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⑤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 ⑥란 :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 ⑦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 ⑧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⑨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 ⑩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⑪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⑫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 ⑬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분보호, 의료보조, 아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수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순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⑪ 가사 : 전업주부 등 ⑫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⑬ 무직 :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부 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4.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6.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일방)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혼(친권자지정) 신 고

사무내용	이혼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한	수리 후 1일(8시간)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인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친권자지정협의서 각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 가능 ○ 재판이혼인 경우 - 판결·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화해조서등본 ※ 신고기간 - 판결·결정 확정일 또는 조정·화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인 신분증 및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신고인-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 쌍방, 재판이혼은 남편 또는 아내 일방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재판이혼은 신고기간 경과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재판이혼시 신고기간 1개월 경과 여부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혼당고사인자	성 명	한글	* (성) / (명)		① 또는 서명	* (성) / (명)		①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부모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 지정	미성년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②모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 부 ② 모 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미성년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②모 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②모 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⑥신고인출석여부		① 남편(夫)		② 아내(婦)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사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⑧실제결혼(동거)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⑨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⑩19세 미만자녀 수		명		⑪이혼의 종류		①협의이혼 ②재판에 의한 이혼	
⑫이 혼 사 유(택 1) 배우자 부정 ② 정신적·육체적 학대 ③ 가족간 불화 ④ 경제문제 수 성격차이 ⑥ 건강문 ⑦ 기타							
⑬국 적	남편	①대한민국출생시국적취득 ②대한민국(수반포함)인시국적취득 이관취득:) ③외국(국적)		처	①대한민국(출생시국적취득) ②대한민국(수반포함)인시국적취득 이관취득:) ③외국(국적)		
⑭취 종 졸업학교	남편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수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처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수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⑮직 업	남편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순 단순노무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수 판매종사자 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순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가사 ⑫ 군인 ⑬ 무직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각 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 ⑦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⑧란, ⑨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⑭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 ⑮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인건, 신분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 가사: 전업주부 등 ㉮ 군인: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부서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식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취소신고

사무내용	혼인취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취소신고서 1부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2호]

혼인취소신고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당 사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③기타사항											
④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	지정 일자	년 월 일		①부	지정 일자	년 월 일		
		②모	원인 ()	법원의 결정		②모	원인 ()	법원의 결정			
		③부모				③부모					
⑥ 신 고 인	성명		⑩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소 제기자 ②소의상대방 ③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란: 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⑤란: 혼인취소재판에서 지정된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⑦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2.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

사무내용	친권자 지정 변경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1부 (재판시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서등본 협의시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 ○ 재판시 :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증 협의시 : 신고인 모두 및 제출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3호]

친권자(①지정②변경)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 자녀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② 부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③ 모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④친권자	성명	(성) / (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①부 ②모 ③부모	
	미성년자 성명					
	①지정일자	년 월 일	②지정원인	① 협의 ()법원의 결정 ② ()법원의 결정		
	①변경일자	년 월 일	②변경원인	()법원의 결정		
	성명	(성) / (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①부 ②모 ③부모	
	미성년자 성명					
	①지정일자	년 월 일	②지정원인	① 협의 ()법원의 결정 ② ()법원의 결정		
	①변경일자	년 월 일	②변경원인	()법원의 결정		
⑤기타사항						
협의를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⑥ 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부 ②모
	주소				전화	
					이메일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부 ②모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 방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란: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⑤란: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⑦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

사무내용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상실, 사퇴)신고서 1부 (상실시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사퇴시 허가심판서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4호]

①친권상실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①상실 ②사퇴)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② 권리 상실자 (사퇴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고 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소 제기자 ②법정대리인 ③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

사무내용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회복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구비서류	○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회복신고서 1부 (상실회복시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사퇴회복시 허가심판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친권자)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5호]

①친권상실회복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①상실 ②사퇴)회복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②권리 회복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소 제기자 ②친권자 ③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⑥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1. 상실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2.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등본 1부.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후견 개시 신고

사무내용	후견 개시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개시신고서 1부 (재판의 경우는 재판서 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증 (신고인 : 후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6호]

후견개시신고서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② (후 신 고 인 인)	성명	한글 (성) / (명)	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전화	
			이메일			
③후견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①지정 ②법정 ③선정				
⑤심판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타사항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 2명 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란 : 후견개시일자 및 원인은 2008. 2. 1. 친권자의 사망(상실), 2009. 2. 1. 한정재산선고확정, 2010. 2. 1. 친권자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 ④란 : 지정·법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날(친권자의 사망, 상실등)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인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 ⑤란 :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1부(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후견인 경질 신고

사무내용	후견인 경질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경질신고서 1부 (재판서 등본 등 첨부) ○ 신고인 신분증 (신고인 : 후임 후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7호]

후견인경질신고서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②전임후견인 성명							
③ 후 ~ 입 신 후 고 견 인 ~	성명	한글	(성 / (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전화 이메일	
④경질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⑤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①법정 ②선정 ③후견인변경재판					
⑥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⑦기타사항							
⑧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 2명 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①란 및 ③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란 :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08. 1. 17. 후견인 사망, 2008. 1. 17. 후견인 사퇴, 2009. 4. 1.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 ⑤란 : 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 후임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경질사유 발생일이 취임일이고, 선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선임심판일이 취임일입니다. 다만, 후견인변경재판에 의한 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변경의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 ⑦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재판서 등본 1부(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후견인 사퇴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 재판서 등본, 후견인변경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4. 신분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후견종료신고

사무내용	후견종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종료신고서 1부 (재판의 경우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사 망 신 고

사무내용	사망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사무소	처리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한	수리 후 1일(8시간)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신고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 - 친족 또는 동거자(신분증, 사망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 병원 사망인 경우 -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인우증명 사망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인 2명 신분증 지참 출석 - 사망증명서 증명인란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이·통장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하여 1명이 증명 가능 			
처리순서	<p>《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p>《 주소지 동사무소 신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 → 주소지 동사무소 접수 → 시청으로 신고서 송부 → 송부된 신고서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신고기간 경과시 최고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여부 ○ 신고기간 경과 여부(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방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망장소 구분: ①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⑩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신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표시하되 ④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인(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⑤ 사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망원인 및 그 밖의 신체상황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⑥ 사망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참고로 기재하되, ② 외인사는 질병 이외의원인 즉,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⑦ 외인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사항이 없는 경우 사고의 종류, 사고 발생지역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⑧ 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표시 · 사망자의 발생(사고)당시 직업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 한 때의 직업을 기재합니다.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수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단순노동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⑩ 가사: 전업주부 등 ⑫ 군인: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⑬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인우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p>※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p>※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p>*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의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 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관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p>*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사 산 신 고

사무내용	사산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구비서류	○ 사산신고서 1부 (검안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부, 모, 동거 친족 또는 유언집행자)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0호]

사 산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피인지자	(태아)				
② 인지자	성명	한글 (성 /명)	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③ 모	성명	한글 (성 /명)	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 사산일자	년 월 일				
⑤ 태아인지 신고일	년 월 일				
⑥ 기타사항					
⑦ 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부 ②모 ③동거하는친족 ④유언집행자 수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인지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⑥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⑧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1부.
-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태아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실종, 부재) 신고 신고

사무내용	실종, 부재신고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 부재 신고신고서 1부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법정대리인 등) 			
업무처리 흐 림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1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input type="checkbox"/>실종 <input type="checkbox"/>부재) 신고신고서 (년 월 일) </div>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①실종자 (잔류자)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사건번호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최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란 실종기간만료일, ③란 사건번호는 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법정대리인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실종(부재)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 부재) 신고 취소 신고

사무내용	실종, 부재신고 취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 부재신고 취소신고서 1부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2호]

(①실종 ②부재) 신고취소신고서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③기타사항						
④신고인	성명	④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 이 신고는 실종(부재)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잔류자(부재신고 된 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③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실종(부재)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적 취득 신고

사무내용	국적 취득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취득신고서 1부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명자료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작성방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 ①란: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같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②란: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③란: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년 ○월 ○일 국적재취득신고, 또는 ○○년 ○월 ○일 국적취득특례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⑥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을 고시한 관보 등).
 2.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취득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귀 화 신 고

사무내용	귀화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신고서 1부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및 소명자료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작성방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귀화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귀화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귀화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 귀화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같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귀화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란 : 귀화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
2. 귀화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귀화자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국 적 회 복 신 고

사무내용	국적회복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구비서류	○ 국적회복신고서 1부 (국적회복허가통지서 및 소명자료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작성 방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국적회복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 ①란: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등록기준지란에는 국적회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주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회복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국적회복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 한국국적 상실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미국 국적취득”,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포기”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 ②란: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란: 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⑤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⑦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 서류

1. 국적회복허가통지서 1부.
 2.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회복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국 적 상 실 신 고

사무내용	국적 상실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상실신고서 1부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6호]

국 적 상 실 신 고 서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적상실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② 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③ 취득한 외국 국적					
④ 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4촌 이내의 친족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②란 : “○○년 ○월 ○일 ○○국 국적취득” 등과 같이 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 사항 및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외국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등본 등) 또는 주재영사의 확인서, 국적상실을 고시한 관보 등].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신고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1부(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개 명 신 고

사무내용	개명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한	수리 후 1일(8시간)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신고기간 1개월 경과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신고기간 경과 여부(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사무내용	등록기준지 변경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한	수리 후 1일(8시간)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부 ○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변경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통보			
수수료	○ 무료			
접수 및 수리심사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 1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등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등록부정정신청

사무내용	등록부 정정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부 정정신청서 1부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소 제기자)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별지>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1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1호]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 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 연결대상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주 소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등록기준지							
	성 명	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 관계등록을 창설한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 ①란 : 신고인과의 가족구성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기록합니다.
- ②란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
- ③란 : 가족관계등록창설자(또는 판명자)의 상대방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④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 후 보 완 신 고

사무내용	추후 보완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비서류	○ 추후 보완신고서 1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원신고사건의 신고인 또는 본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2호]

추 후보 완 신 고 서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명	한 글	(성) / (명)	성명	한 글	(성) / (명)		
		한 자	(성) / (명)		한 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②원 신 고		신고일자 및 사건명	년 월 일 _____ 신고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후보완사항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①원신고사건의 신고인 ②기타(자격: _____)						
	주 소		전 화		이 메 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②란 : <기재례> 2008년 1월 1일 혼인신고

③란 : <기재례> 처 김인숙의 본“경주”를 추후보완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창 성 신 고

사무내용	창성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성신고서 1부 (창성허가심판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성 · 본 변경 신고

사무내용	성 · 본 변경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 · 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 · 면	
전화번호	061)797-2479, 3418	처리기간	당일 수리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변경신고서 1부 (성분 변경허가결정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